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금천소방서 건립공사]

- 점검일시 : 2021.01.11 (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정진혁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3층 E/V실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구를 폐쇄하고 추락위험 표식 부착 요망
 - 3층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미비된 가설비계로 통행하지 않도록 관련 작업자 재발방지 교육하고 해당 개소 보수, 보강 요망
 - 3층 비계 해체작업자는 추락 높이는 2m가 안되지만 불안정한 벽체 거푸집 횡비계 위에 서서 상부로 비계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관리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,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,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, 제56조(작업발판의 구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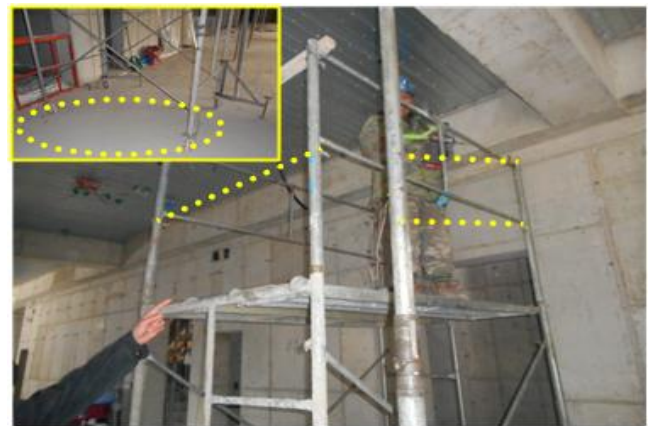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4층 바닥슬래브 작업장에 돌출된 거푸집 구조는 작업은 없으나 추락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이므로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시설 설치 요망

- 4층 바닥슬래브 철근조립 단부와 외벽비계 사이에 추락가능한 공간이 있으므로 외벽비계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가설통로와 하부에 추락 방지조치 요망

- 2층 이동식비계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아웃트리거 4개소 중 2개소만 고정하고 2개소는 설치도 안 된 상태이고, 작업대는 상부, 중간난간이 부분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이므로 보수, 보강하여 사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 및 관리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,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,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, 제68조(이동식비계)

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지하1층에 미사용 중인 이동식 비계는 바퀴가 모두 빠져 있고 아웃트리거만 거치되어 있어 양 옆으로 흔들리는 상태로 이대로 사용할 경우 전도에 의한 추락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해체하고, 현장에 상부 안전난간 없이 방치된 다수의 이동식비계도 사용하지 않도록 전수조사 하여 모두 해체 요망



- 지하1층 중정 출입구에 설치된 작업발판은 상부 안전난간이 모두 해체된 상태로 올라가 작업을 할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해체하고, 해체 시에도 발판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요망

- 훈련탑 구조물 공사장에 설치된 외벽비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수직사다리가 하부 작업발판이 없는 개소에 있어 상승/하강 중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태이므로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조치 후 사용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,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,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, 제68조(이동식비계)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유로폼은 답단 폭이 좁고 판이 코팅되어 미끄러워 가설경사도로 사용할 경우 전도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건축부)

- 훈련탑 구조물 출입구는 상부에 개구부가 연속해서 있는 계단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낙하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방호선반을 설치 요망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건축부)

- 3층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양/하역하는 폐기물 중 항공마대에 손상이 우려되는 철선 등 날카로운 내용물이 적재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 및 관리 요망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14(항공마대)



○ 거푸집동바리 안전(건축부)

-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공사를 위해 설치된 거푸집동바리의 수직비계가 고정이 미흡한 상태로 콘크리트 타설 전에 수직도, 조립도 준수 여부, 고정상태 등 확인 요망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(조립도), 제332조(거푸집 동바리 등의 안전조치)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10(거푸집 동바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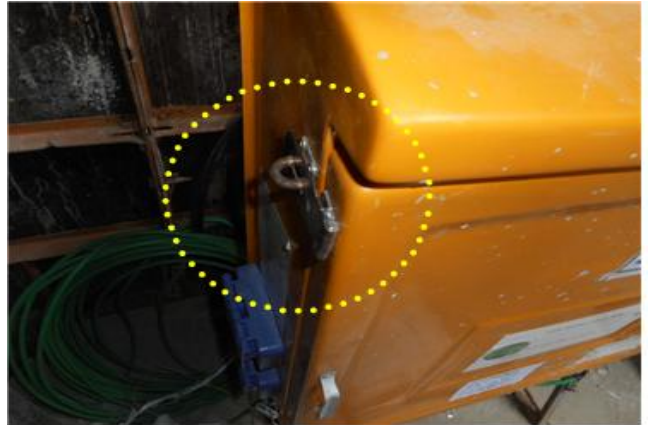
○ 가설비계 안전(건축부)

- 지하 피트층 벽면 방수를 위해 유지되고 있는 작업비계는 벽 이음이 없는 독립구조로 높이가 높아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방수작업 전에 사보강재를 추가 설치하여 보강 요망
- 주요 조립 체결부에 돼지발톱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요망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

○ 감전재해 예방(건축부)

- 이동전선을 통로바닥에 방치하여 사용할 경우 피복이 훼손되어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밟히지 않도록 관리 요망
- 분전반은 전기전문가 외에는 열어서 조작하지 않도록 시건하여 관리 요망
- 이동전선에 연결된 전등을 바닥에 방치하여 전구가 파손되고 바닥이 습윤한 상태가 되면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닥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작업자 재발방지 교육 및 관리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(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)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16(분전반), 017(가설전선)



○ 기계기구 안전(건축부)

- 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말비계가 현장 조립품으로 품질을 장담할 수 없고 작업 중 이음부가 파단 될 경우 전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장 제작품으로 교체 요망
- 사용 준비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선반은 측면에 가림 판 등과 같은 접촉방지시설이 없이 톱날하부가 노출된 상태로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



우 절단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 전 보호조치 요망
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06(말비계), 027(목재가공용 등근톱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건축부)

- 콘크리트 양생용 온풍기 사용 시 후방으로 화염이 발생되므로 배치 후 후방 주변의 인화성 자재는 모두 치우고, 근로자도 인근으로 통행할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통행하도록 통제시설 설치 요망
 - 동절기 한파로 석탄난로를 사용 중으로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에는 인화성 자재가 없도록 관리하고 환경법 상 폐목재나 폐기물을 땀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요망
 - 구조물 내 공간을 활용하여 근로자 휴게실 및 탈의실로 활용하고 온열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를 대비하여 출입구 내외부에 소화기 비치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4조(방화조치), 제245조(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)



